

경기인등록 규정 및 기타 주요 중요한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p>□ 선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자격: <u>학생선수, 학생외 선수구분</u> - 등록구분 : <u>초/중/고/대학부/일반부/동호인부</u> - 등록심사: <u>3단계 심사</u> (시·도종목단체→시·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p>□ 선수 등록변경 및 활동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적동의서가 없어도 등록은 가능 그러나, 2년간 활동제한 - 활동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조항 - 2년간 미등록 시 2년간 활동제한 	<p>□ 전문선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자격: <u>학생 구분 삭제</u> - 등록구분 : <u>13세/16세/19세이하부/대학부/일반부</u> - 등록심사: <u>2단계 심사(30일내)</u> (<u>시·도종목단체→회원종목단체</u>) - <u>대학 학점인정 시설은 종목단체 자율</u> <p>□ 전문선수 등록변경 및 활동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적동의서에 따른 등록과 활동 일치 - 활동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이적동의서가 불필요한 경우에 적용 - 2년간 미등록 시 1년간 활동제한 	선수 규제 완화
<p>□ 체육동호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구분: <u>선수등록구분의 동호인부</u> - 등록심사: <u>3단계 심사</u> (시·도종목단체→시·도체육회→회원종목단체) - 등록지, 등록변경 등 선수와 동일 	<p>□ 동호인선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구분: <u>구분 없이 등록</u> - 등록심사: <u>2단계 심사(30일내)</u> (시·도종목단체→회원종목단체) - 등록지, 등록변경 등의 제한 없음 	동호인 자율성 반영
<p>□ 지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결격사유, 3단계 심사</u> 	<p>□ 지도자, 심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등록: <u>결격사유 개정, 2단계심사</u> - <u>심판등록: 선수와 동시 불가, 1단계심사, 2020년부터 시행</u> 	공정성 강화
<p>□ 징계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학교관련자(교장, 교사, 코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의뢰</u> 	<p>□ 징계조치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실효성이 없는 징계의뢰는 삭제</u> - <u>미등록자가 활동했을 시 2년 등록제한</u> - <u>결격사유: 제명, 자격정지 등록 불가</u> 	공정성 강화

○ 구분별 개정 조항

구분	전문선수	동호인선수
등록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세이하부 수시 등록 가능 - 등록심사 신속 및 절차 간소화 · 등록신청 방법 개선 · 시·도체육회 확인심사 생략 · 등록심사 기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종별 수시 등록 신청(안 제7조) - 등록심사 및 절차 간소화 · 좌동(안 제25조) · 좌동(안 제26조) · 좌동(안 제26조)
등록구분	- 13세이하부, 16세이하부, 19세이하부,	- 등록 구분 없음

구분	전문선수	동호인선수
개선	대학부, 일반부 - 연령 구분에 따라 학제와의 관계 명시	
등록변경 개선	- 이적동의서 필요없는 대상 확대 · 13세이하부 · 동일 시·도내 진학·전학 및 클럽간 변경 등 - 이적동의 현장에 맞게 개선 · 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지만 학교 소속일 경우 이적동의를 시도종목단체에서 확인 가능	- 이적동의서 없음
활동자격 제한	- 이적동의 없이 변경시 활동제한 → 삭제 * 등록과 활동의 자격을 일치화 - 선수포기 및 2년 이상 등록하지 않았을 때 활동 제한 2년 → 1년	- 해당 없음
종목단체 운영 자율화	- 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자율적 운영 - 평생교육원 등의 등록구분 - 해외유학생 등록 여부 결정	- 해당 없음

제9조(등록자격) 실업팀 관련 이적 폐지

일반 실업팀 선수 등은 소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실업팀에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채용되거나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하더라도 만 2년 동안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

⇒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적동의서 필요가 없음.

등록변경 유의사항

- ① 전문선수가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적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전문선수가 등록변경을 하지 않고 타 시·도의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등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마지막에 등록한 팀의 이적동의서와 마지막에 등록한 팀의 관내 시·도의 상급학교로부터 타 시·도로 진학 및 등록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등록변경을 위한 이적동의를 변경 전 소속단체장이 동의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도협회 단체장이 동의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지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소속단체 이전 등의 사유로 등록지만 변경하는 경우

이적동의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1. 13세 이하부 전문선수의 경우
2. 동일 시·도 안에서 진학·전학하는 중·고등학교 소속의 전문선수의 경우
3. 동일 시·도 내 중·고등학교에 운동경기부가 없어서 타 시·도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4. 소속 학교가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고 해당 시·도 내 동일 종목의 운동경기부 정원이 부족하여 타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학교 운동경기부 소속의 전문선수일 경우
5. 클럽소속의 전문선수가 동일 시·도 안에서 클럽 간에 변경의 경우
6. 16세이하부 또는 19세이하부 전문선수의 보호자가 생계유지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전 가족이 전·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19세이하부 전문선수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8. 19세이하부 또는 대학부의 전문선수가 졸업 후 실업팀소속의 일반부로 등록을 하는 경우
9. 군 입대 및 제대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10. 소속단체의 해체 및 소속한 실업팀과 계약이 만료된 경우
11. 부상,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람
12. 전문선수가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등록일(등록신청일을 등록일로 한다)부터 만 2년이 지난 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2020년도 심판자격증 발급 절차 : 심판강습회, 심판연수회 이수자에 한하여 심판자격검증 시험 응시 가능 → 별도 심판자격검증 시험 합격 후 발급

징계여부 확인서 발급 관련 시행세칙

- ① 근거 : 스포츠 미투 최근 사회적 문제 야기 후 지도자 취업 시 일선학교에서 중앙협회의 징계여부 확인서 제출 의무화 실행되고 있음.
보고사항 6)에 의하여 폭행, 폭력 야기 지도자가 실제로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한 경우 실제 징계를 피한 상황
- ② 실행 : 이러한 경우 징계여부 확인서에 “징계를 받은 사항이 없지만 반드시 이 전소속의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례를 정확하게 확인 후에 채용하기 바라며 채용 후 이전 소속팀의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채용한 학교가 책임을 지기 바란다” 는 내용 추가

실적 관련 사항

현재: 대한체육회 인터넷 실적 발급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실적 신청 및 발급

개선: 선수등록 완료시점(3월 말) 전에 당해 연도 실적 발급을 요청할 시 선수등록 자료가 전산에 반영되지 않아 전산시스템으로 발급이 불가하여 일시적으로 이전 협회 발급 시스템으로 경기실적을 발급 할 수 있다.